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'98. 1. 16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'98. 1. 9

○ 회부일자 : '98. 1. 9

다. 상정일자 : 제14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 ('98. 1. 16)

2. 제안설명 요지

(기획관리실장 : 김 동 기)

가. 제안내용

○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 직명 변경

○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 추가지정

나. 주요골자

- 당연직(위원장)중 “부지사”를 “행정부지사”로 직명 변경
- 관계법령 제정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)에 따라
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 추
가지정
- 위원회 결정사항중 삭제된 조문의 정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태 인)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관계법
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
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- 당연직 위원중 위원장인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직명을
변경하고
-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
회에 “정보공개심의회”를 추가 지정하며
- 기타 삭제된 조문의 정리를 하기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
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참석 5명, 찬성 5명)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불임서류

-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
- 신·구조문대비표